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933

발의연월일: 2025. 4. 17.

발 의 자:김예지·김선교·박덕흠

강민국 • 서천호 • 정성국

김소희 · 최수진 · 신성범
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·조사,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 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,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.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 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, 동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,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

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 장애	제58조(장애인복지시설) ①
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	
호와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5.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
	<u>익옹호기관</u>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